신용카드업 상생·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

2024. 8.

금 융 위 원 회 금 융 산 업 국

١.	검토배경 1	1
Π.	카드산업의 현황 및 평가	2
III.	적격비용 제도 현황 ······ {	5
IV.	제도개선 논의 경과	3
٧.	제도개선 방안1()
IV.	추진 일정15	5

│. 검토배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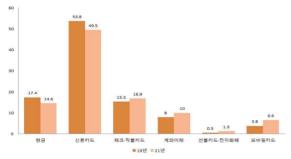
- □ '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**업종별 가맹점 수수료** 체계('78~)에서 벗어나 <mark>적격비용</mark>에 기반한 **수수료 체계** 도입
 - '12년 이후 3년마다 적격비용 재산정 작업을 시행하였으며,
 현재까지 총 4차례 산정('12, '15, '18, '21년말)
 - 그간 **우대가맹점 확대, 우대수수료율 인하***를 통해 제도 도입시 기대했던 **수수료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달성**한 것으로 평가
 - * (연매출 3억 이하) '12년前 수수료율 약 4.5% → '22년 0.5% (연매출 3억~30억) '12년前 수수료율 약 3.6% → '22년 1.1~1.5%
- □ 다만, 결제 특성에 따른 고비용 구조로 인해 카드회원, 카드사, 가맹점 3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관한 논란·갈등 지속
 - 이에 그간 현행 제도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제도개선 수요를 논의하기 위해 TF^* 를 통해 전문가,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
 - *「카드수수료 적격 비용 제도개선 TF」운영('22.2월~)
- □ 한편, IT기술 발달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국내외에서 지급결제 혁신이 급격히 진행 중
 - 해외에서는 간편송금, QR코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결제플랫폼* 등장 및 은행·카드 등 기존 금융인프라의 디지털 혁신** 진행
 - * 인도 UPI, 케냐 M-Pesa, 브라질 Pix 등, ** NFC기술을 이용한 비접촉식 카드결제 등
 - 국내에서도 실물카드가 아닌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간편결제
 서비스의 이용 비중이 확대*되는 등 결제 행태가 변화
 - * '23년 신용·체크카드결제 형태: 모바일기기 등(50.5%) > 실물카드(49.4%) '23년 카드기반 간편결제 서비스 현황 : 핀테크 등(67.7%) > 카드사(32.3%)
- □ 현행 법령은 실물카드를 통한 오프라인·가맹점 거래를 상정하고 있어 새로운 결제수요·방식을 온전히 포괄하는데 한계
 - ⇒ 적격비용 제도 도입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카드사, 가맹점, 소비자 간 상생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·추진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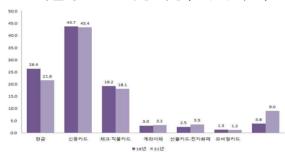
Ⅱ. 카드산업의 현황 및 평가

□ 카드 이용현황

- □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인 지급수단으로 자리매김
 - 신용카드는 지급수단별 이용금액(49.5%)·이용건수(43.4%)에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 비중은 소폭 감소
 - 이 신용카드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편리성과 구매처에서의 수용성에 힘입어 아직까지 가장 높은 만족도*를 보임
 - * 2021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(한은, '22.5월) : 신용카드(79.4점)>체크·직불카드(75.0점)>현금(74.3점)>선불카드·전자화폐(54.1점)

< 지급수단별 이용비중(금액기준, %) > < 지급수단별 이용비중(건수기준, %) >





- □ **신용카드 발급매수**와 구매이용액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
 - '23년 기준 신용카드 발급매수는 1억 2,980만매(전년 대비 +4.53%), 구매이용액은 **941.8조원**(전년 대비 +6.1%) 수준
 - '20년~'22년 **연 10% 수준**의 구매이용액 증가세는 **다소 둔화**
 - '23년 기준 체크카드 발급매수는 **1억 446만매**(전년 대비 △ 0.6%), 구매이용액은 **197.5조원**(전년 대비 +2.54%) 수준

< **카드 발급매수**(단위: 만매) >

11,097 12,000 10,000 6,000 4,000 2,000 '18∤₹ '19년 '20년 '21년 '22년 '23년 ■ 신용카드 ■ 체크카드

< **카드 구매이용액**(단위: 조원)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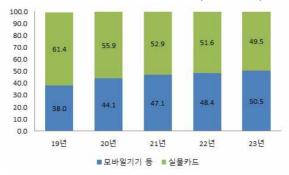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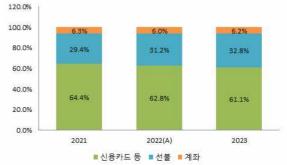
② 결제 형태 현황

- □ 신용카드 등을 통한 대면결제* 이용규모는 60%, 비대면결제 이용규모는 40% 수준
 - * '23년중 국내 지급결제동향(한은, %) : ('19)66→('20)61.2→('21)59.2→('22)59.9→('23)60.1
 - 전자지급결제대행서비스(PG)를 통한 비대면·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*하는 추세
 - * 신용카드 결제대행 현황(일평균) : ('21) 7,444.7 → ('22) 8,577.3 → ('23) 9,610.0억원
- □ '23년 처음으로 모바일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* 비중(50.5%)이 실물카드를 이용한 결제 비중(49.4%)을 넘어섬
 - * (비대면) 온라인에서 모바일기기로 결제, (대면) 모바일기기를 단말기에 접촉하여 결제
 - 오바일기기 등을 통한 결제방식 중 간편결제 서비스*를 이용
 하는 비중도 꾸준히 증가('19년 35.1→'23년 48.5%)
 - * 카드정보를 모바일기기 등에 미리 저장해두고, 지문·비밀번호 등 간편인증 수단을 통해 결제(그 외에는 직접 카드번호, 유효기간 등 카드정보를 입력·결제)
 - 카드 간편결제 서비스 중 핀테크, 휴대폰 제조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비중은 67.7%(카드사는 32.3%)
- □ 간편결제 서비스(신용카드·선불전자지급수단·계좌 등)는 지속 증가* 추세
 - * '23년(일평균): [건수]2,735만건(전년比 +13.4%), [금액]8,755억원(전년比 +15.0%)
 - 전금업자 제공 서비스 중 신용카드 등의 이용 비중*이 여전히
 가장 높으나,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
 - * 전금업자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중 신용카드 등 비중(이용금액) : ('20) 65.9% → ('21) 64.4% → ('22) 62.8%, → ('23) 61.1%

< **카드 결제형태별 비중** (단위: %) >

< 전금업자 간편결제 서비스 내 이용현황단위 % >





③ 카드사 수익성 및 경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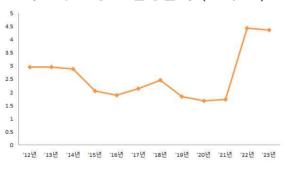
- □ 카드사 당기순이익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다, 최근 소폭 감소
 - 카드 구매이용액이 지속 증가함에도 불구하고, 가맹점수수료
 수익은 7~8조원 수준*으로, 총 수익 중 비중**도 지속 감소
 - * ('18) 7.9→ ('19) 7.2 → ('20) 7.1 → ('21) 7.7 → ('22) 7.7 → ('23) 8.3조원
 - ** ('18) 39.1 \rightarrow ('19) 35.8 \rightarrow ('20) 35.2 \rightarrow ('21) 35.5 \rightarrow ('22) 32.9 \rightarrow ('23) 31.1%
 - < **카드사 당기순이익** (단위: 억원) >

30,000 25,000 20,000 17,388 16,463 15,000 0 '18 '19 '20 '21 '22 '23 ●당기순이역(IFRS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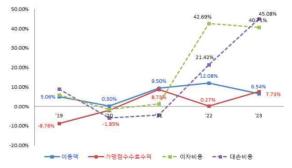
< **카드사 총수익** (단위: 억원) >



- □ 최근에는 **금리상승, 경기침체** 등으로 **연체율과 조달금리** 등이 상승*함에 따라 **이자비용과 대손비용**이 크게 증가
 - * 연체율(%) : ('18) 1.48→ ('23) 1.63, 카드채 평균금리(%) : ('18) 2.46 → ('23) 4.37
 - < **카드채 연평균 발행금리** (단위: %) >



< 카드이용액 등 전년대비 증감률 >



- □ 신용카드업의 시장집중도는 최근 5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음
 - 신규 진입비용에 의한 진입장벽이 크게 나타나는 신용카드
 시장 특성상 상위 3,4개사 점유율이 큰 변동 없이 유지*
 - * CR(n)(상위 n개사 시장점유율), HHI(허핀달-허쉬만지수)은 큰 변동 없이 유지
 - ⇒ 디지털 전환에 따라 **다양한 대체수단**이 확대되고 있으나, 카드사들은 **신용판매** 기반의 **박리다매 방식** 영업 중으로 **서비스 다변화** 및 비용절감을 통한 경쟁력 제고 필요

Ⅲ. 적격비용 제도 현황

① 우대수수료율 제도 및 경과

- □ 연매출 30억원 이하 **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**에 대해서는 **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화**
 - (산정근거) 국세청의 부가세·소득세 등 과세자료 근거 판단
 - (대상 선정) 연 2회(반기별)
 - (우대가맹점)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*(전체 가맹점의 96%)
 - * '12년 제도 도입 당시 연매출 2억원 이하(전체 가맹점의 68%)에서 크게 확대
 - (우대수수료율) '15, '18, '21년에 걸쳐 구간별 수수료율 인하

< 우대수수료율 변동 경과 >

	: 우대가맹점	신용카드 수수료율 (괄호 : 체크카드)				
※ <mark></mark> . 구네/7명엽		'12년말 개편	'15년말 개편	'18년말 개편	′21년말 개편	
	2억원 이하	1.5% (1.0%)	0.8% (0.5%)	0 99/ (0 50/)	0 E9/ (0 2E9()	
	2~3억원		1.3% (1.0%)	0.8% (0.5%)	0.5% (0.25%)	
연	3~5억원	2.12%(1.6%)		1.3% (1.0%)	1.1% (0.85%)	
매	5~10억원		2.120/ (1.520)		1.4% (1.1%)	1.25% (1.0%)
출	10~30억원		2.09%(1.6%)	1.6% (1.3%)	1.5% (1.25%)	
_	30억원 초과			2.000/44.470/	2.070/ (4.450/)	
	(평균수수료율)			2.06%(1.47%)	2.07%(1.45%)	
연간	누적 절감 규모	약 3,300억원	약 1조원	약 2.4조원	약 3.1조원	
(연긴	· 추가 절감 규모)	(+3,300억원)	(+6,700억원)	(+1.4조원)	(+6,900억원)	

^{* &#}x27;23년 기준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신용 1.53%, 체크 1.05%

2 산정 주기 및 절차

- □ (산정주기) 적격비용 재산정은 3년*마다 실시
 - * '12년 체계 개편 시 시장환경 변화가 원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3년으로 결정
- □ (산정절차) 회계법인의 검증절차를 거쳐 법적·회계적 기준에 비추어 공정·타당하게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에 반영
- □ (산정결과) 일반가맹점은 가맹점별로 적격비용을 산정하여 수수료율 책정(업계 자율 상한 2.3%)
 - 적격비용 산정 결과를 기초로 한 수수료 경감 가능 금액을
 고려하여 우대수수료율 조정

참고 1

적격비용 제도 개요

1 원칙

- □ '78년 이후 유지된 업종별 수수료 체계*에서 '12년 적격비용에
 근거한 가맹점별 수수료 산정체계로 전환 → 6개 원칙 수립
 - * '78년 서민업종 3%, 일반업종 4%, 유흥.사치업종 5%의 단순 체계
 - ①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점간 수수료 차별 금지(법 §18의3①)
 - ②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(적격비용)만 수수료율 산정에 반영(법 §18의3②, 감독규정 §25의4① i)
 - ③ 특정 가맹점에 대한 혜택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가맹점이 부담(법 \$18의3②, 감독규정 \$25의4①ii)
 - ④ 객관적이고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수수료율 산정(법 \$18의3②, 감독규정 \$25의4①iii)
 - ⑤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(법 §18의3③)
 - ⑥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 및 부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금지(법 §18의3④, 감독규정 §25의4①iv)

< 가맹점수수료 기본 체계 >



⇒ 카드사가 **객관적인 자료**에 기초한 **합당한 비용**과 그로 인한 **편익**을 가맹점별로 부담지울 수 있도록 각 요소별 **구체적 기 준 제시**(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4)

2 산정 요소

① (자금조달비용) 신용판매와 관련한 신용공여기간*의 금융비용 * 카드사의 가맹점 판매대금 지급일 ~ 회원의 이용대금 첫 회 납입일



- ※ **부적격 비용** : 회원에게 이자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(예: 할부, 리볼빙수수료 등)에는 수수료에 이미 자금조달비용이 반영되어 불인정
- ② (대손비용) 신용카드회원이 신용판매 이용대금을 납부하지 않 아 발생하는 손실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
 - ※ 부적격 비용 : ① 카드사가 신용위험을 감수하고 신용카드를 발급·갱신한 저신용회원(개인신용평점 0점)에 대한 대손비용, ②회원에게 이자성격의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(예: 할부, 리볼빙수수료 등), ③대손준비금 등
- ③ (일반관리비용) 급여 등 인건비, 전산운영비, 임차료, 공과금 등 일반적인 관리활동에 소요되는 비용
 - 전체 비용을 매출액 기준으로 사업 부문간 배분 후, 신용판매 부문 비용을 수익기준 등으로 가맹점 및 회원간 배분
- ④ (거래승인·매입정산비용): 지급결제정보의 송·수신, 거래승인, 매출전표 매입, 결제거래 정산 등의 대행 대가(VAN수수료 등)
 - o 가맹점별 매입방식* 차이를 고려하여 **발생비용 반영**
 - * 전산화 및 자동처리 정도에 따라 건당 처리단가 상이
- 5 (마케팅비용)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부가서비스 등 신용카드 매출 확대 비용 → 특정 가맹점 매출증대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되 는 마케팅 비용은 해당 가맹점에 직접 귀속
 - ※ 부적격 비용 : ①회원·가맹점 모집비용, ②경품, 이벤트 등 약관에 따른 부가서비스 비용 외 행사·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
- 6 (조정비용) ^①야간, 비대면 거래 비중이 높은 가맹점(가산), ^②국가· 지자체와의 계약 등 특수가맹점(차감)의 경우 비용 조정 가능

□♥. 제도개선 논의 경과

- □ 「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」 운영('22.2월~)
 - (구성)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, 금융연구원, 여신금융협회,
 카드사,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, 가맹점단체*, 소비자단체**
 - * 마트협회, 소상공인연합회, 외식업중앙회, PG협회, 석유유통협회·주유소협회, 통신사업자연합회(적격비용 제도개선 TF에 의견제시를 희망한 가맹점단체는 모두 포함)
 - **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
 - (목적) 카드수수료 제도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, 제도개선 수요를 파악하여, 카드산업·가맹점·소비자 상생 도모

<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 TF 논의 경과 >

회의 개최일	주요 논의 내용
2022.2.24.	● 적격비용 제도개선 추진배경 및 향후 계획
2022.3.25.	● 적격비용 관련 법령 및 해외사례
2022.5.12.	● 적격비용 산정 현황
2022.7.22.	● 적격비용 제도 관련 이슈
2022.9.19.	• 적격비용 제도개선 관련 실무협의(금감원, 금융연, 협회)
2023.5.17.	● 적격비용 제도개선 관련 실무협의(금감원, 금융연, 협회)
2023.7.4.	• 가맹점단체(마트협회, 소상공인연합회) 면담
2023.7.6.	● 가맹점단체(한국외식업중앙회, PG협회) 면담
2023.7.18.	● 카드사(8개 전업카드사) 및 카드노조 면담
2024.4.18.	● 가맹점단체(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및 통신사) 면담
2024.5.30.	• 가맹점단체(한국석유유통협회, 한국주유소협회) 면담
2024.7.2.~7.5.	● 여신금융협회, 카드노조, 가맹점단체 면담

- □ 「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검토」 정책연구용역 실시 ('22.12월, 금융연)
 - 국내 신용카드 시장, 현행 가맹점수수료 체계, 이해관계자별
 의견, 해외사례 등을 통해 정책목적별 개선과제 검토
 - ⇒ 적격비용 산정방식에 대해서는 산정주기 조정 및 탄력적인 운영 등 다양한 의견 제시
 - 이해관계자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필요성 제기

참고 2

신용키드 기맹점수수료 채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요 내용

◇ 정책목표별로 현 가맹점수수료 체계 내 문제점과 개선방안 검토

1.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 부과가 목적인 경우

- □ (산출방식) 평균원가 산정 시 수수료가 별도로 책정되는 우대 가맹점과 일반가맹점 적격비용을 별도 책정하는 방식의 경우,
 - 보다 합리적으로 볼 수 있으나, 기술적 어려움, 관련 전산개발 비용 증가, 영세가맹점 수수료 부담 증가* 등 문제 발생 가능성
 - * 규모의 경제 고려시 통상 영세·중소가맹점이 일반가맹점에 비해 비용이 높게 나타남
- (산정주기) 연장 시 조달·대손비용 등 경기순환적인 비용*의 변동성을 상쇄하여 실제 비용과 수수료 간 괴리 발생을 방지하나,
 * 단, 고금리 지속시 과거에 기반한 낮은 조달비용률이 장기간 영향 → 수익성 악화
 - 경향성을 가지거나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비용 요소에서는
 주기가 길수록 실제 비용과 수수료 간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

2.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이 목적인 경우

- □ '12년 적격비용 제도 도입 후 **우대수수료 인하, 우대가맹점 범위 확대**로 가맹점 수수료 부담 경감 목표는 달성
- □ 추가적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**수수료율 내역 공개·설명** 및 **수수료 변화**, 차이에 대한 근거 제시 등 정보제공 확대 필요

3. 카드사 영업비용 감소 유도 목적인 경우

- □ 가맹점수수료 체계 취지를 구현하면서 **카드사-가맹점간 상생**을 위해 카드사의 **영업비용 감소시** 참여자 **모두 비용경감 가능**
 - 부가서비스 확대 등을 통한 출혈 경쟁 소지가 있는 마케팅
 비용 감소 유도하되, 생산적 경쟁은 장려

4. 가맹점수수료의 정책 개입 최소화가 목적인 경우

- □ 적격비용·우대수수료율, 의무수납제 폐지 등을 **종합적**으로 검토
 - **우대수수료율** 폐지시 → 영·중소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가능
 - 적격비용 폐지시 → 협상력에 따라 영·중소, 또는 중소형 일반 가맹점 수수료 인상 가능
 - 의무수납제 폐지 → 소비자 불편 가중, 조세체계 건전성 훼손 우려

∨. 제도개선 방안

- 1 가맹점 권익 및 소비자 편익 제고
- □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
- □ (**현황**) 카드사는 가맹점에 "결제일+3영업일(매입일+2영업일)"이내 대금을 지급하되, 영세·중소가맹점은 일부·한시적 단축 중*
 - * (연매출 ~5억원) "결제일+2영업일"로 단축 운영 중 (연매출 5~30억원)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"결제일+2영업일"로 한시단축('20.3.~'25.9.)
 - 현재 자금조달비용은 가맹점에 대한 대금지급일부터만 인정
 되고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에 따른 비용은 불인정

< 자금조달비용 인정범위 >



- □ (개선방안) 영세·중소가맹점은 "결제일+2영업일" 이내로 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하고,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주기 단축 유도
 - 대금지급 주기 단축을 위한 카드사의 선제적인 유동성 확보
 비용 일부를 적격비용으로 인정*
 - * 대금지급 주기를 단축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매출전표 매입일부터 자금조달비용 인정

②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

- □ (**현황**) 카드사는 일반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시에도 **인상 사유** 없이 수수료율만 통지하고, 별도 이의신청 관련 안내는 없음
 - 또한, 일반가맹점은 매출규모별 구분 없이 평균 수수료율*만 공시
 * 소비자 결제금액별 수수료율, 우대수수료율, 전체 평균수수료율 공시(여신협)
- □ (개선방안) 가맹점수수료율 안내·이의제기 및 공시 강화
 - 수수료율 인상 시 사유를 설명하고, 별도 이의제기 채널(전담 부서 설치)을 마련하여 이의제기 검토결과는 여신협 제출
 - 공시 시에는 **가맹점별 매출액 구분**(30억원 이상) 등 **공시 세분화**

③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개선

□ (**현황**) 여전업감독규정(§25의4②, 별표5)은 가맹점 특수성을 고려 하여 적격비용을 차감 조정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

< 여전업감독규정 [별표5] >

- ① 국가·지자체가 신용카드업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경우
- ② 행정기관이 행정서비스 이용대금 등을 결제 받으면서 법령 등에 명시한 경우
- ③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서 공공성을 갖는 경우
- ④ 그 밖에 신용카드업자가 객관적합리적 근거를 기초로 ①~③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
- 다만, 공공성을 갖는 경우 등에 대한 감독규정상 일부 기준이
 불명확하여 카드사가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 가능하다는 지적
- □ (개선방안) 全 카드사의 특수가맹점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고, '공공성을 갖는 경우' 등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*
 - * (예) 교통, 난방 관련요금 등 재화 또는 용역이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서 가격에서 세금 등 공공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경우 등

④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

- □ (**현황**)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카드를 **손쉽게 관리**할 수 있는 "내 카드 한눈에^{*}" 서비스 운영중(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)
 - * 카드발급·휴면카드 현황, 포인트 조회·현금화, 자동납부 조회·이동서비스 등
 - 다만, 카드 자동납부 조회·이동 대상이 다소 제한적*이고,
 휴면카드 해지·재개 기능 등이 부재하여 이용에 제약
 - * 계좌이동서비스(은행)와 달리 통신·아파트관리비·스쿨뱅킹·4대보험·전기요금 등만 가능
- □ (개선방안) "내 카드 한눈에" 서비스 확대 운영
 - ① "휴면카드관리 서비스"를 신설하고, 휴면카드 보유현황 조회 및 해지·계속이용 실시간 처리 서비스 제공
 - ② 카드 자동납부 정보 일괄 조회·변경·해지서비스 확대

'23년말		'24년		'25년~
전기요금	\Rightarrow	참여기관(인터넷전문은행)	\Rightarrow	도시가스, 정기
이동서비스 개시		및 채널 확대(카드사 앱)		구독료(OTT) 등 확대

2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

□ 카드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

- □ (**현황**) 카드업권은 전자문서 전환 등이 타업권에 비해 비교적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다양한 비용이 발생
 - * [이용대금명세서] 연간 1천억원, [매출전표] 연간 630억원, [정보성메시지] 연간 152억원 등 비용발생 추정(여신협)
 - 약관의 경우 여전법 개정('23.6월 시행)으로 전자문서 교부가
 가능해졌으나, 이용대금명세서 등은 여전히 대부분 서면 교부
 - 한편, 안내사항 등을 전자적인 방식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도
 타 업권에서 널리 사용하는 모바일메시지(예: 알림톡) 보다는
 SMS로 주로 안내
- □ (개선)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등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고비용 방식의 안내 방식 개선(일반관리비 절감)

< 디지털 안내방식 변경 주요 사항 >

- ① (이용대금명세서) 서면 수령고객을 대상으로 전자문서 전환을 **사전에** 안내하고, 회원 요청이 있는 경우는 언제든지 서면으로 변경
- ② (매출전표) 단말기 기본 설정을 "미출력"으로 단일화(요청시 출력)
- ③ (정보성 메시지) 소비자 피해 관련 주요 정보(예: 연체 등)는 제외하고, 단순 안내 메시지는 모바일메시지(예: 알림톡)로 발송

②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

- □ (**현왕**) 코로나19 이후 경제여건 악화로 **신복위 개인채무조정** 신청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**고의적인 악용 사례** 발생
 - 특히, 신용카드의 경우 채무조정 직전 사치성 상품에 대한 고액
 사용 등 도덕적 해이 사례*가 빈번
 - * (예) 5.31일 신용카드 발급 및 1,500만원 결제(백화점) → 6.2일 채무조정 신청
- □ (개선) ^①반복신청 제한 및 ^②심의위의 적합성 판단 기능 강화 등 제도개선^{*}을 통해 도덕적 해이 방지(대손비용 절감)
 - * ①1년 이내 2회 이상 반복신청 불가, ②심의위 권고로 도덕적 해의 의심 대상 채무조정 제외 근거 마련

③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기준 명확화

□ (**현황**) **과당 경쟁**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 중이나,

< 여전법시행령(§7의3, 별표1의3 2호 바목) >

- ①법인회원의 카드 발급·이용에 따른 연간 "총수익 < 총비용" 금지
- ② 법인회원의 "연간 총 이용액의 0.5% 초과"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(소기업 등 제외)
- 카드사가 규제를 준수하는 과정에서 사안별로 법인회원의
 범위 및 경제적 이익 산정방식 등이 불명확한 경우가 발생
- □ (개선방안)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가이드라인 신설(여신협)
 - 법인회원의 범위, 경제적 이익 산정방식, 소기업 확인방식*
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
 - * 영세·중소신용카드 가맹점 등 과세자료 등을 통해 객관적인 매출액 확인이 가능한 경우 소기업 확인서를 생략

3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

- □ (**현왕**) 최근 빅테크·핀테크가 등장하면서 송금·결제·대출 등 금융 서비스를 재결합(Rebundling)하는 등 지급결제 부문 경쟁 확대
 - 신용카드는 국내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제수단
 -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가맹점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입*,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 등을 선도
 - * 지급수단 중 현금 이용비중(%, 금액기준) : ('17)20.3 → ('19)17.4 → ('21)14.6
 - 다만, 대면서비스 중심의 기존 규제체계 등으로 비대면·모바일· 데이터 기반 지급결제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 - 또한, 그간 마이데이터, 개인사업자 CB, 데이터전문기관 지정 등
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으나,
 - 여전히 카드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신용판매·카드대출 등 소비자 금융에 영업활동이 한정

□ (개선방안) 카드업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맹점 및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할 필요

①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

- 소상공인(가맹점)에 대한 금융·비금융데이터 기반의 공급망 금융 등 생산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新 사업영역 발굴 지원, 인센티브 제공
- 카드비교·추천서비스 제도 개선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이용자 소비패턴 분석 기반 확대
- 데이터 활용업무 확대 등을 위한 겸영·부수업무 규제 합리화

②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

- 신용카드업을 업무방법이 아닌 신용공여 및 지급결제의 결합이라는 기능 위주로 재정의
- 디지털 환경을 반영하여 실물카드·대면거래 중심 체계 개편
- 개인간 월세, 중고거래 카드결제 등 결제 대상 확대
- 미성년자 체크카드·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 현실화 검토

③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안정성 강화

- 2차 이하 PG 및 하위사업자 등에 대한 영업행위 규율방안 등
- 전금업자와의 규제차익 해소(동일기능-동일규제)
- 비대면·다단계 거래 환경을 고려한 결제안정성 확보방안 마련
- ⇒ 중장기 검토과제에 대해서는 **신용카드업 상생·발전** TF^{*}를 구성하여 **제도개선 방안 마련**(~'24.下)
 - * 금융위, 금감원, 전문가, 카드업계, PG사, 국제브랜드사, 핀테크사 등

Ⅵ. **추진 일정**

주요 과제	조치	일정				
1. 가맹점 권익 및 소비자 편익 제고						
① 가맹점 대금지급 주기 단축	감독규정, 약관 개정	~'24.12월				
② 가맹점수수료율 이의제기 절차 내실화	전산발 및 약만 개정	~'24.12월				
③ 특수가맹점 선정기준 개선	감독규정 개정	~'24.12월				
④ 카드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확대	전산개발	~'24.3Q				
2. 고비용 거래구조 개선						
① 카드업 디지털 전환 촉진	약관 개정 등	~'24.10월				
②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한 채무조정 제도 개선	시행세칙 개정 등	~'24.12월				
③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기준 명확화	가이드라인 제정	~'24.10월				
3. 신용카드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						
① 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 활성화		~'24.下				
② 새로운 결제수요 대응	TF 구성 및 개선안 마련					
③ 규제 사각지대 해소 및 결제안정성 강화						